

『KBR』 논문 및 사례 심사과정

2017. 03. 30. 개정

2018. 04. 23. 추가제정

I. 심사 기준

1. 공통심사기준

논문의 창의성, 논문주제의 가치성,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자료의 제시, 선행연구와의 관련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연구의 한계에 대한 제시, 원고작성규정의 준수 정도

2. 각 항목별 심사기준

(1) “교육용 사례(Teaching case)”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한다.

- | | |
|-----------|-----------|
| ① 사례의 중요성 | ② 사례의 독창성 |
| ③ 사례의 현실성 | ④ 사례의 실용성 |

(2) “경영 실무와 연구에 도움이 되는 논문”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한다.

- | | |
|--------------|------------|
| ① 연구의 중요성 | ② 연구의 독창성 |
| ③ 연구의 현실적 공헌 | ④ 방법론의 타당성 |
| ⑤ 결론의 유의성 | |

(3) “경영교육과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문”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한다.

- | | |
|--------------|------------|
| ① 주제의 적절성 | ② 연구의 독창성 |
| ③ 연구의 현실적 공헌 | ④ 방법론의 타당성 |
| ⑤ 결론의 유의성 | |

II. 심사절차 및 방법

1. KBR의 투고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편집위원장은 투고요령에 맞지 않거나 현저하게 질이 낮은 원고에 대해서는 저자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2. 편집위원장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 유사율이 8% 이내인 투고논문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한다.
3.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즉시 논문접수일자를 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와 동시에 분야별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4.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 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임시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
5. 투고된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비밀심사(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 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를 받는다.
6. 편집위원장은 1차 심사가 완료된 후 집필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며 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논문집필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하도록 한다.
7. 편집위원회는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만을 게재하고 논문심사와 관련된 행정처리는 간사가 담당한다.
8. 특별기고로 초청 받은 논문의 경우도 위와 같은 심사과정을 경유하여 필요한 수정을 필 한 후 게재한다.

Ⅲ. 심사기간

1. 심사위원 선정 및 논문 발송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날로부터 초심(28일 이내)과 재심(14일 이내)을 포함하여 3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심사가 늦어지면 서면으로 2회 독촉을 하고, 독촉 후에도 2주 이내 답변이 없을 시 심사철회하고 다른 심사자를 선정한다.

2. 심사위원 재 선정 및 심사기간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여 심사할 경우, 심사기간은 규정 기간의 2/3로 하며,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의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IV. 판정

1. 초심 심사결과는 별도의 심사의견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무수정 게재, 소폭수정 후 확인게재, 소폭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등의 5단계로 판정하며, 재심 심사결과는 게재가, 소폭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등의 3단계로 판정한다. 이때, 재심 심사결과를 최종심으로 한다.
2. '무수정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3. '소폭 수정 후 확인게재'는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내용상에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일부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자가 제시한 수정의견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투고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투고자는 규정 기일까지 수정된 논문, 수정사항 요약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 결과 확인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4. '소폭 수정 후 재심'은 일부 수정사항이 필요하거나 논문의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투고자는 심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한 후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심 심사위원은 초심심사위원으로 한다.
5. '대폭 수정 후 재심'은 수정사항이 필요하거나 논문의 내용이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투고자는 심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한 후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심 심사위원은 초심심사위원으로 한다.
6. '게재불가'는 논문의 내용이 독창성이 없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 또는 수준이 극히 낮아 논문집에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심사위원은 게재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게재 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7. 심사자간 의견불일치 논문의 처리
 심사자 3인의 심사결과가 상이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최종 판정한다.
 - (1) 심사결과에 따른 처리
 - ① 게재확정: 2명 이상의 심사자가 무수정 게재 의견
 - ② 수정확인 후 게재: 심사자 중 무수정 게재 의견 외 소폭 수정 후 확인게재 의견이 있는 경우에 수정요청에 따라 수정 후 확인을 거친 후 게재 확정

- ③ 수정 후 재심사: 심사자 중 소폭 수정 후 재심사 혹은 대폭 수정 후 재심사의견이 있는 경우 수정 요청에 따라 수정 후 초심자에게 수정확인을 의뢰하고 확인을 거친 후 게재 확정
- ④ 게재불가확정: 심사자 중 두 명의 심사자가 게재불가 의견을 주는 경우 게재불가로 확정하고 저자에게 통보한다. 단, 저자의 반론 제기 시 아래 8 번에 의거 처리한다.

(2) 심사결과의 통보

게재확정 혹은 게재불가확정 논문에 대해 확정 즉시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3인의 심사결과가 모두 접수되지 않은 경우, 게재확정 논문은 최종 접수한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본을 제출하도록 통보하며 게재불가확정 논문은 두 번째 게재불가 의견이 접수되는 즉시 통보한다.

8. 이의신청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수정요구 및 재심 이유에 대해 반론이나 서로 다른 시각 또는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투고자는 1회에 한하여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상당한 논거나 실증적 사례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심사의 경우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최종판정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심사 횟수의 제한

심사의 횟수를 초심을 포함하여 총 3심 이내로 제한한다. 3심에서는 “수정 없이 게재”, “소폭 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불가”의 3가지 단계 중 하나의 심사 결과만으로 판정하게 한다.

10.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V. 원고의 수정 및 게재

1.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저자에게 최대 2개월의 논문 수정기간을 제공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정분에 대한 재심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2주 이내로 한다. 만약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지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고철회로 간주하며, 투고자가 심사를 원할 경우에는 모든 심사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2.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경우 편집위원회가 권고하는 편집방침 및 원고작성 요령에 따라 수정요청 후 7일 이내에 원고를 반드시 수정하여 편집위원회로 송부한다. 편집위원회는 방침에 따라 수정된 논문을 1회에 한하여 저자들에게 보여 줄 의무를 지닌다.
3. 게재가 확정된 개별 논문의 경우 학술지 발간 시 게재확정 일자를 명기하여 심사과정에 있어 구체성과 엄정성을 제고한다.
4. 동일인(또는 공동연구에서 동일한 제1저자)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저자는 1편만을 선택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나머지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